

의안번호	2215582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6.01.29.
추계번호	25C7382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의2 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<u>기관</u> 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국유재산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국유재산을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<u>1.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</u> <u>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9조의2 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국·공유재산 무상 대부·사용 특례의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임

- 정부는 현행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를 전국에 설치하고,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,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¹⁾
 - '26년 기준 중앙 및 시·도센터 19개소, 시·군·구센터 120개소가 운영 중이나 수도권은 모든 시·군·구에 설치된 반면, 기타 지역의 설치율은 평균 35%에 수준에 그쳐 지역 간 격차가 큼

1)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7조(육아종합지원센터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·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이에 개정안은 센터 설치·운영을 위하여 국·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육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임
 - * [참고자료]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건축비·운영비와 국·공유재산 무상 대부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분의 합계액임
 - 그러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신규 설치될 센터의 규모와 입지, 무상 대부 대상이 될 국·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움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

구분	중앙 및 시·도	시·군·구	
		센터 수(A)	설치율 ¹⁾
서울 (27)	2	강남구, 강동구, 강북구, 강서구, 관악구, 광진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동작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성북구, 송파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용산구, 은평구, 종로구, 중구, 중랑구 (25)	100%
부산 (13)	1	기장군, 강서구, 금정구, 동래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상구, 수영구, 연제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서구 (12)	75%
대구 (4)	1	달성군, 동구, 수성구 (3)	33%
인천 (8)	1	계양구, 남동구, 미추홀구, 부평구, 서구, 연수구, 동구 (7)	70%
광주 (3)	1	동구, 서구 (2)	40%
대전 (3)	1	대덕구, 서구 (2)	40%
울산 (6)	1	울주군, 남구, 동구, 북구, 중구 (5)	100%
세종 (1)	1	—	0%
경기 (34)	2	고양시, 과천시, 광명시, 광주시, 구리시, 군포시, 김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부천시, 성남시, 수원시, 수원시동부, 시흥시, 안산시, 안성시, 안양시, 양주시, 여주시, 오산시, 용인시, 의왕시, 의정부시, 이천시, 파주시, 평택시, 포천시, 하남시, 화성시, 가평군, 양평군, 연천군 (32)	100%
강원 (4)	1	강릉시, 원주시, 춘천시 (3)	17%
충북 (6)	1	영동군, 제천시, 진천군, 청주시, 충주시 (5)	45%
충남 (4)	1	서산시, 아산시, 천안시 (3)	20%
전북 (8)	1	군산시, 김제시, 남원시, 익산시, 전주시, 고창군, 부안군 (7)	50%
전남 (4)	1	광양시, 순천시, 여주시 (3)	14%
경북 (7)	1	구미시, 김천시, 문경시, 상주시, 안동시, 포항시 (6)	27%
경남 (5)	1	거제시, 양산시, 진주시, 창원시 (4)	22%
제주 (2)	1	서귀포시 (1)	50%
합계 (138)	19	120	53%

주: 1) 전체 시·군·구 수 대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시·군·구 수입
자료: 한국보육진흥원